

4단계 BK21사업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내규

2021. 3.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4단계 BK21사업: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4단계 BK21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4단계 두뇌한국(Brain Korea)21 사업을 말한다.
- ② “운영”이라 함은 4단계 BK21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구팀의 제도적, 행정적 및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

제3조(구성) 본 교육연구팀은 작용소의 함수론 연구 분야, 저차원 다양체의 기하 구조 연구 분야, 대수적 구조 분석 연구 분야, 확률론 및 응용 연구 분야, 과학적 계산 및 응용 연구 분야, 금융수학 및 응용 연구 분야로 구성된 6개 연구 분야를 둔다.

제4조(재정 및 회계 연도) ① 본 교육연구팀 재원은 정부로부터 4단계 BK21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과 대학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

- ②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에 따른다.

제5조(교육연구팀 구성 및 운영조직) ① 교육연구팀은 고려대학교 수학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및 연구교수)으로 구성한다.

- ② 교육연구팀은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연구팀의 장(이하 “교육연구팀장”이라 한다)을 둔다.
- ③ 교육연구팀은 사업운영에 주요 결정 사항을 팀장과 참여교수의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교육연구팀장의 자격, 임기 및 교체) ① 교육연구팀장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학과 전임교수이다.

- ② 교육연구팀장의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대학 및 교육연구팀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교육연구팀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팀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④ 교육연구팀장이 1년 이내의 연구년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수행으로 교육연구팀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⑤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교육연구팀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팀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 명이 교육연구팀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연구팀장의 의무, 책임 및 권한) ①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있어 대학본부(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와 유기적 연계 관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참여교수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교육연구팀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를 갖는다.
 - ③ 예산을 운영하고 필요시 조정할 집행 권한을 갖는다.
 - ④ 대학원생과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집행 권한을 갖는다.
 - ⑤ 교육연구팀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진다.
 - ⑥ 교육연구팀 운영을 위한 안전에 따라 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⑦ 교육연구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팀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는다.

-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연구팀장 및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예산과 팀 내 인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교육연구팀 예산, 결산의 구성에 관한 결정
 2.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업적성과에 따른 성과급 결정
 4.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구성에 관한 결정
 5. 신진연구인력의 구성에 관한 결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의 대학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 및 검토 보완
 2. 학생들의 논문지도부터 석·박사학위심사 전 과정을 관리 감독
 2. 국제어 강의, 외국인 교수 초빙,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팀 내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

- 제9조(참여교수의 의무와 권한) ①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의 연구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 ②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육연구팀장에게 건의할 권한을 갖는다.

- 제10조(참여대학원생의 관리)
- 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교육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은 그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게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교육활동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들 간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0조제2항의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1. 수행결과가 우수한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 지급
 2. 수행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참여대학원생의 교육연구팀 퇴출 또는 지원 중단
 3. 매 학기 평가

- 제11조(신진연구인력의 관리) ① 박사후과정생 및 연구교수의 신규 채용은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상황에 따라 선발방식은 참여교수 추천과 공개채용 중 택일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다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조건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본부의 관련 내규 범위를 따른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동안의 연구업적 등을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업적이 뛰어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재계약의 기회를 준다.

- 제12조(국제협력) ①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계절학기, 국제학술회의 참가, 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단기 해외 연수는 실적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외학자 초빙은 BK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칙) ①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② 이 내규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4단계 BK21사업 재단에 문의한다.

제14조(해산) 본 교육연구팀은 4단계 BK21사업이 완료되는 날로 해산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내규의 시행과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지침

제16조(목적) 4단계 BK21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기구) 본 내규 시행을 위한 4단계 BK21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위원장)과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제19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단, 생계형 주말 아르바이트(4대보험 적용)는 가능하며,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보험 가입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 학기 종료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졸업예정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졸업으로 인하여 마지막 월을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한다.

제20조(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4단계 BK21 연구 장학금 총액이 석사과정생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생은 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70만원 이상 지급가능)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30만원 이상 지급가능)

3.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원 (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가능)

② 4단계 BK21사업에서 지원받는 학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선발 직전 학기에 SCIE급 저널에 출판 혹은 게재확정인 경우 한 편당 추가 연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③ 4단계 BK21사업에서 지원받는 학생이 휴학, 유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사전에 통보해야지만

1개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학기 말인 2월, 8월에 성과급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④ 졸업예정자의 마지막 월의 경우 졸업으로 인하여 해당 월을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해외학회 참가 지원의 경우 공평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우수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제21조(의무) ① 지원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연구재단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기간 안에 필수로 제출한다.

② 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한 학기에 본인의 연구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연구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③ 교육연구팀장은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장학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선발)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 장학금 신청을 하고, [표1]에 기재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사업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 학생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표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석사/석박사통합과정/박사과정)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논문실적	SCIE급 저널에 주저자로 논문 출판 혹은 게재확정	1편당 200점	직전학기	
특허	국 제	출원	1건당 100점	직전학기
		등록	1건당 1000점	
	국 내	출원	1건당 50점	
		등록	1건당 500점	
학술발표	국 제	200점	직전학기	
	국 내	50점		
학회참석	국 제	30점	직전학기	
	국 내	15점		
특허 반영비율	한 건당 점수 x 발명자 공헌도 동일공헌도일 경우, 한 건당 점수 = 공헌자 비율 / 동일 공헌자수 (단, 교수 및 외부인 제외)		첫 번째 공헌자 100%, 두 번째 공헌자 70% 세 번째 공헌자 30%, 네 번째 이하의 경우 10%	
참여도	BK 관련 참여도 1건 당 3~10점		직전학기	
발전가능성 (최대 100점)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잠재된 역량에 따라 추천 (타 연구비 지원 및 공동저자로 논문 참여 여부 조사를 위해 각 지도교수의 추천을 고려한다.)		직전학기	
지원 제한	형평성을 위해 직전 학기 BK 지원을 받았지만, 실적이 미비한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한다.		직전학기	

제23조(휴가) ① 연차휴가는 한 학기 당 12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② 휴가는 매 학기(3월, 9월) 갱신되며 해당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③ 교육연구팀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사유로 해외체류기간(해외여행, 휴가 등)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성과급 지급) ① 교육연구팀 주최 및 추천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과 학술연구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참여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② 성과급 지급은 [표2]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항목별 평가 점수를 총합한 뒤, 높은 순서대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금 지원을 받지 않는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며, 지원받는 대학원생 중에서 우수한 실적 및 4단계 BK21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기준

평가항목	평가 점수	
참여도	4단계 BK21 연구활동 보고 및 참여도/ 강의(특강) 수강 / 필수 서류, 증빙 등 제출	0-100점
학회 발표	국 제	500점
	국 내	100점
학회 및 교육 참석	국 제	20점
	국 내	10점
논문실적	국내/외 출판된 SCIE/SSCI 논문	300점 내 실적 순 차등분배
수상실적	1회당 20점	

(단, 학회 발표, 논문실적, 학회참석은 조사 기간 내에 실시한 것만 인정한다.)

제3장 참여교수의 평가 및 선발 기준에 대한 지침

제25조(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 내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26조(평가기간) ① 평가는 제25조에 근거하여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4단계 BK21사업 개시 후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27조(참여교수의 평가) ① 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고려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한다.

② 논문은 SCIE나 SSCI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2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F의 합으로 한다. 단, IF는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③ 논문의 정량적 평가는 연구재단의 수학 분야를 따른다.

④ 그 외 세부사항은 4단계 BK21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자체평가안의 기준을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참여교수의 선발) ①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성공적인 4단계 BK21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교육과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 기간을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연구소 등 소속으로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되어 있지 않은 교원은 제외한다.
- ④ 참여교수의 소속은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 과정의 학과가 같아야 한다.
- ⑤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는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
- ⑥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참여교수의 교체) 참여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단, 교육연구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들면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교수
2.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3.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4.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 해당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침

제30조(목적) 본 내규는 4단계 BK21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평가대상 업적물 기준 시기) 평가를 위한 평가물과 활동내용의 기준 시기는 해당 사업 연도의 시작일 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2조(성과급 지급)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팀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단, 사업 기간이 6개월인 1차년도와 8차년도는 교육연구팀 기여도(내규 작성 자료 준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로 평가한다.

-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 ③ 성과급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3]에 따르고 결과에 따라 상위 50% 이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표3]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연구 실적	SCIE, SSCI, 저명 국제 학술대회 논문 수 (1편당 30점)	최근 1년
산학협력 실적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사업화 및 창업 실적 (200점)	최근 1년
팀 기여도	교육연구팀 내 기여도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등)	
총점	최대 1000점	

제33조(내규의 개정)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5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지침

- 신진연구인력 활용

제34조(신진연구인력) ① 교육연구팀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연구교수를 채용·지원한다.

②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와 연구 가능한 자(우수한 연구실적을 배출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신진연구인력의 우수한 연구실적(SCIE급 논문 20편 이상 또는 전공 분야별 TOP 저널 논문 출판 등)을 바탕으로 참여교수의 적극 추천일 경우 우선 선발한다.

③ 박사후과정생의 채용기준은 최근 2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연간 평균 SCIE급 논문 1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논문실적이 있으면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본 3년, 최장 4년).

⑤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은 대학원 강의 및 지도 대신에 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연을 수행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종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본교 박사학위자는 2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종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35조(임무와 권리) ①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팀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내외 강의를 할 수 있다.

② 연구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팀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③ 연구교수는 교수회의 의결권이 없으며 학내보직을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성과급 지급 기준) ① 매년 2월 및 8월에 신진연구인력의 최근 6개월간의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

육연구팀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③ 성과급 평가항목 및 배점은 [표4]에 따르고, 총합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표4]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연구 실적	SCIE 또는 SSCI급 논문 수 (연간 1편 의무실적, 의무실적 이외에 초과 달성 시 1편당 100점)	최근 6개월
학술발표 실적	국내 발표: 20점(1회당 20점)	최근 6개월
	국외 발표: 100점(1회당 100점)	
산학협력 실적	특허 출원 실적(200점)	최근 6개월
	기술 이전 실적(30점): 상(30)/중(20)/하(10)	최근 6개월
	사업화 실적(30점)	최근 6개월
	창업 실적(20점)	최근 6개월
팀 기여도	교육연구팀 내 기여도 평가(50점)	

제37조(휴가) ① 연차휴가는 채용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1년간 8할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1년 미만자의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④ 연차휴가는 채용일 기준 1년마다 갱신되며 해당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교육연구팀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사유로 해외체류기간(해외여행, 휴가 등)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 산학협력전담인력 활용

제38조(목적) 이 내규는 정부의 4단계 BK21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려대학교 수리과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산학협력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자격) ①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산학협력 관련 전문적 업무경력자 또는 산학협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②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40조(산학협력전담직원의 정의) 산학협력전담직원이라 함은 산업수학과 관련된 산업체를 발굴하여, 협동과정에 소속된 참여 학생들의 취업연계·현장실습·산학공동과제, 참여교수의 연구수행 지원 등 산학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매개자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임용절차)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총장에게 위촉 추천한다.

1. 교육연구팀장 추천서
2. 산학협력전담직원 활용계획서
3. 근로계약서
4. 학력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이력서

제42조(임용기간)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임무)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40조에 정의한 교육연구팀 내의 산학협력업무에 전념한다. 단,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44조(처우) 산학협력전담직원에게 지급할 보수는 4단계 BK21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45조(해촉) ① 산학협력전담직원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한다.

1. 제43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교육연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장 국제화 경비 관련 지침

제46조(국제화 경비의 지원) 교육연구팀장이 대학원 국제화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장기해외연수, 해외학자 초청 등의 국제화 경비를 지원한다.

제47조(국제학회 지원) ①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학회인 경우, 국제협력경비를 지원한다.

1. 4개국 이상 참여
2.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국내 개최 시에는 1/3 이상)
- ②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1인당 최대 500만 원/회 범위 내에서 학회 개최지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제경비를 지원한다.
- ③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부실학회 참석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제59조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한다.
- ⑤ 학회 참가 전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국제협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탑승권(Boarding pass) 및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제48조(장기해외연수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대상자는 신청서와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교육연구팀장이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③ 선발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IBT 100점 혹은 TEPS 600점 이상
 2. 국제학회 참석(2점), 발표(5점)
 3. SCIE 또는 SSCI급 논문(5점)
- ④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및 체재비(대학여비 기준)이며, 1인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 ⑥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연수 참가 전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 후 “국제협력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탑승권(Boarding pass) 및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 제49조(해외학자초청 지원) ① 당해연도 해외학자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신청하고, 교육연구팀장은 연구 분야와 해당 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초청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해외학자를 초빙하며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참여대학원생과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숙박비, 자문료(교내강사료 지급기준을 따른다) 및 회의비이며, 1인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비용은 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7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0조(출장비) ① 국내 출장 여비 산정은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국내 출장은 학회참석, 연구 협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 출장신청서, 학회프로그램일정, 초청장, 출장과 관련된 메일, 승차권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51조(강사료) 4단계 BK21사업의 강연료 지급기준에 따르고 세미나신청서, 세미나 일정표, 이력서, 강연자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52조(회의비 집행) 회의비 집행 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교육연구팀 자체 회의록을 갖춰야 한다.

제53조(지원비의 사용) 학회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제학술대회의 진행경비는 국제화 경비에서 지원해야 하고, 기념용품 등의 제작은 불가하다.

- 제54조(교육연구팀 전담행정인력) ① 교육연구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전담 인력에 급여 및 성과급을 교육연구팀 운영비 내 인건비에서 지급한다.
- ② 행정전담인력의 성과급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에 업무 기여도에 따라 매 학기 말에 지급한다.
- ③ 연차휴가는 교내 규정에 따라 1년간 8할 이상 근속한 자에게 15일 제공하고, 여름휴가들은 연차 신청으로 사용한다. 단, 1년 미만의 경우 월 1회의 연차휴가가 제공된다.
- ④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인력이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퇴직급여보장법」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중간정산할 수 있다.

제55조(예산집행 방식) 교육연구팀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은 한국연구재단 교육연구팀 연구비 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제8장 연구윤리 규정

제56조(정의) ① “연구윤리”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할 가치나 규범을 말한다.

②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제57조(목적)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알고 실천해야 연구윤리 기준을 정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시 공정한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기준) 교육연구팀의 연구윤리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2019)」을 따른다.

(참고: <https://library.korea.ac.kr/research/research-ethics/research-ethics/>)

제59조(부실 학술활동 정의 및 예방) ① 부실 학술활동이란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의 발표가 채택되는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및 학술대회를 말한다.

② 교육연구팀 소속 연구자들이 건전한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한다.

③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 및 발표 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논문 투고 및 국제학술대회 등록 전 반드시 각 호의 체크리스트를 점검한다.

1. 논문 투고 시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편집위원회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논문 검색 서비스에 색인 가능합니까?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 <https://thinkchecksubmit.org> 사이트 활용

2. 학회 참석 시 체크리스트

-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기초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 <https://thinkcheckattend.org> 사이트를 활용한다.

④ 논문 게재료 및 학술대회 참여 지원을 받는 경우 고려대학교에서 각 호의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부실 학술활동 단체 리스트 <http://s2journal.bwise.kr/jrnl/predConferList.do>

2. 부실 학술지 및 출판사 리스트 <http://s2journal.bwise.kr/jrnl/beallsList.do>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